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055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 제안이유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주요내용

- 가.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 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토록 함 (안 제4조, 제5조)
- 다.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며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함 (안 제7조)
- 마.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조례에 의해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제4조에 따른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군·구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7.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연관이 있는 기관을 점검·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점검·평가의 대상업무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④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점검·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3. 지역녹색산업의 육성·지원
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인천센터 활성화

③ 시장은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생활 실천)** ① 시장은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실천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우수 단체 및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 법령</p>	<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li> <li>○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 제6조(사업자의 책무)</li> <li>○ 제7조(국민의 책무)</li> <li>○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li> <li>○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li> <li>○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li> <li>○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li> <li>○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li> <li>○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li> <li>○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li> </ul> <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li> <li>○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li> <li>○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li> <li>○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작성”</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없음”</p>
<p>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없음”</p>

# 관련법령 발췌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

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

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

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